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1976)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 번호 2018-55

1. 메이슨 캐피탈 엘.피. (MASON CAPITAL L.P.)
 2.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 (MASON MANAGEMENT LLC)
-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절차 명령 제 8 호

중재판정부
Professor Dr. Klaus Sachs (의장중재인)
The Rt. Hon. Dame Elizabeth Gloster
Professor Pierre Mayer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21 년 8 월 16 일

2021년 3월 12일,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본 단계에 대한 절차일정표를 설정하고 심리일정을 확정하는 절차 명령 제 4호를 발령한 바,

2021년 4월 15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서면 제출 기한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요청에 비추어 절차일정표를 수정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당사자들이 그 중 하나에 합의하도록 상호 협의할 것을 요청한 바;

2021년 4월 19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제안한 절차일정표 수정안 중 하나에 동의를 표한 바;

1. 심리는 2021년 10월 9일에서 16일 사이에 열린다;
2. 중재판정부는 제안된 2022년 3월 날짜(2022년 3월 19(토)-26일(토))를 심리예정일로 보류한다; 및
3. 중재판정부는 2021년 8월 13일까지 당사자들과의 협의 후 2021년에 심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021년 4월 21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확정하는 절차 명령 제 7호를 발령한 바;

2021년 8월 9일,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 바:

1. 코로나 19 관련 건강 우려 및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심리 일정을 취소;
2. 현재 보류된 예정일(즉, 2022년 3월 19일부터 26일까지)에 심리를 진행하되, 동 결정을 코로나 19 관련 건강 우려 및 그 시점에 실시되는 여행 제한 조치에 따라 재고할 수 있도록 명령;
3. 당사자들이 2022년 3월 심리를 뉴욕에서 대면으로 진행할지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할지 여부 등 심리 방식 및 실행계획을 상호 협의할 것을 명령; 및
4.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 2022년 1월 19일(수)까지 2022년 3월 심리의 진행 여부 및 방식과 관련하여 합의된 입장 혹은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명령한다.

동일,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에게 피청구국의 요청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바;

2021년 8월 11일,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요청한 바:

1. 2021년 10월 심리 일정을 취소;

2. 당사자들의 사전 합의와 일치한 2022년 3월 19일부터 26일에, 예측 불가능하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세계 전역의 코로나 19 관련 섯다운 재개 등)이 없을 시, 비대면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더라도 심리할 것을 명령; 및
3.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 2022년 2월 1일까지 심리 실행계획을 협의하고 보고하도록 명령한다.

2021년 8월 13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심리 일정에 대한 결정을 통지한 바;

동 절차 명령은 2021년 8월 13일자 서한에 명시된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기록한 바;

중재판정부는 다음 사항을 명한다:

1. 당사자들의 협의에 비추어, 2021년 10월 심리 일정은 취소한다. 대신에, 심리는 절차 명령 제 6호에 따라 2022년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2.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2022년 1월 10일(월)까지 심리 실행계획에 대해 상호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3.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뉴욕에서의 대면 심리를 공동 선호한다는 점을 주지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논의에서 2022년 1월에 뉴욕행 여행이 여전히 제한될 경우 대체 심리 장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중재지: 싱가포르

(서명)

Professor Dr. Klaus Sachs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